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86

발의연월일: 2020. 8. 4.

발 의 자: 한준호·홍성국·이형석

오영환 • 이해식 • 임오경

박상혁 • 김원이 • 양정숙

양기대 · 서영석 · 김한정

전용기 · 송갑석 · 김철민

유재갑 • 이소영 • 김민철

김성환 · 최종윤 · 전혜숙

이수진 · 송영길 · 윤관석

박용진 • 김영배 의원

(26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에 차질이 생기는 등 교육 공백이 심각한 상황임. 또한 교육 공백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중위권 학업 성취도 역시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 상황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코로나19 '교육 재난'에 대응하고자 '온라인클래스 종합상황실', '기술상황실' 등을 마련하고 비대면 교육에 힘써왔으나 온라인 교육 시 접속 불량,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명시해 코로나19와 같은 '교 육 재난'시 원격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취약계층 을 고려한 교육 재난 정보전달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안정 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7조제4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제7조(업무)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4의2.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관리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